

## 「2020년도 산학연 현장 맞춤형 융합지원사업」 CAE 장비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모집 공고

초기단계 제품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마련을 위해 「시제품 제작 지원사업」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, 사업안내에 따라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. 10. 16.

(사)울산산학융합원장

### 1

### 사업개요

#### □ 개 요

- (지원목적) 아이디어와 제품 컨셉은 갖고 있으나,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역 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마련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
- (지원대상) 울산지역 소재 중소기업\*
  - \* 사업공고일 기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
- (지원규모) 총 16,500천원(사용장비별 지원금 한도내 지원, ※ 부가세 제외)
- (사업기간) 2020. 11. 2. ~ 2020. 12. 11.(1개월)
- (지원형태) (역)설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이용료와 재료비 등 지원
  -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장비를 선택하여 기업지원 신청

## 2

## 지원내용

### □ 지원내용

- 양산 이전의 검증 및 아이디어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
  -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이용료, 재료비, 가공비 및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
사용장비	지원내용	지원기업 수	지원금
3D 스캐너/ CAE S/W	-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설계(CAD) - 제품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형 설계	1개사	최대 500천원
3D 프린터 (금속)	- 아이디어 구현 및 가시적 형태 요소 파악을 위한 소프트 목업 - 제품의 디자인 확정을 위한 디자인 목업	2개사	최대 3,500천원
3D 프린터 (폴리머)	- 기능설계를 완료하고 금형 제작 전 점검을 위한 프로토타입 목업	3개사	최대 3,000천원

- 기업 당 사용장비 지원금 한도 내 지원 / 6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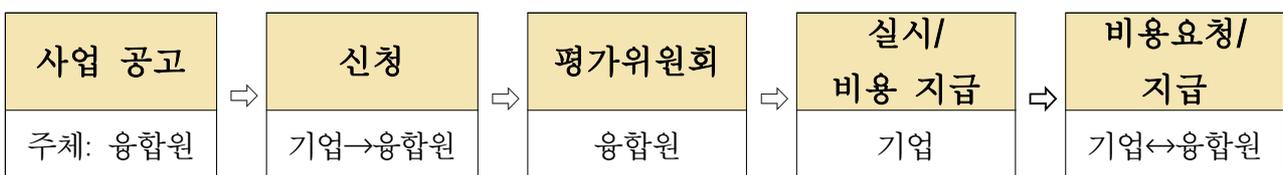
※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(총사업비: 16,200천원 이내)

- 지원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청기업 부담(ex. 110만원 사용시 100만원 지원)
- 지원금은 기업에서 선 지출된 비용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정산 후 지급

## 3

## 추진절차 및 지원방법

- 추진절차



○ 추진일정

추진일정	추진내용	비고
2020. 10. 16.(금) ~ 10. 30.(금)	추가모집 공고 및 접수	홈페이지 게재
	↓	
2020. 11. 3.(화)	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	
	↓	
2020. 11 5.(목) ~ 12. 11.(금)	사업수행기간	기업
	↓	
~ 2020. 12. 21.(목)	최종 사업결과보고/비용청구	융합원

##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### □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: 2020. 10. 16.(금) ~ 2020. 10. 30.(금) 17:00까지 우편\* 또는 방문 접수

\* 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불인정함.

○ 접수처: 울산산학융합원 사무실

- 주소: (44776)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, 기업연구관 504호

- 문의처: 052-240-8822, kwonch11.com

○ 신청양식: 울산산학융합원 홈페이지(www.ulsan-uic.kr) 사업공고 참조

### □ 제출서류

○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

연번	제출자료	내용	비고
1	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신청서	1부	원본
2	시제품 제작 사업계획서	1부	원본
3	견적서 (장비보유 기관 발급)	1부	원본
4	사업자등록증	1부	사본

## 5

## 기타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

## □ 유의사항

- 선정된 기업은 지원비용의 10% 이상 자부담
- 시제품 제작 후 결과보고서 제출 (필요 시 시제품을 요청할 수 있음)
- 부가가치세 기업부담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## □ 사업비 환수 기준

연번	세부항목
협약 해지 및 사업비 지급불가	① 불성실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기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	② 사전 동의 없는 사업비의 임의 집행,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
	③ 지원금 수령을 위해 이미 완료된 시제품을 은폐하고 사업을 허위로 진행하는 경우
	④ 사업기간 도중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협약 해지를 진행한 경우
부당지출액 환수	① 본 사업과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한 경우
	② 지급기준 위배, 불명확하게 지출한 경우

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울산시 이외의 다른 지역 소재 기업
- 신청서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
-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체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